

1. 개정이유

폐수배출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후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자가측정을 이행했다면 일정기간 내에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등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89조의2제4항)

시설의 유형 및 용수의 종류, 저류조 용량 및 청소 주기, 시설 명칭 등 변경 시 변경 전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시설의 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토록 개정함.

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준수사항 정비(안 별표 19)

현행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처리방법은 위탁처리만 가능하나,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처리·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 22)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 수질이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

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24시간 이동평균치가 1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하·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경우는”을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로서 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제38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 변경 전

2. 제2항제1호: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 법 제46조에 따른 측정 결과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8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9 제7호2) 중 “위탁처리”를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전단 중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를 “24시간 이동평균치가 1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u>경우는 제외한다</u>)	3. ----- ----- ----- ----- <u>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u>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로서 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③ -----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 <단서 삭제>

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제1항 각 호: 변경 전

2. 제2항제1호: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 법 제46조에 따른 측정 결과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제2호에 해당

1. ~ 3. (생략) ⑤ (생략)	<u>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